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우리시 세수일실을 방지하고자 자치구로 위임한 시세 중 우리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시세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로 위임한 시세 중 우리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 직접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5항).
- 나. 시 세무조사를 통해 발생한 시세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1. 5. 27.~6. 16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추정 세액(특별시분 재산세 및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제외한다)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과·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추징세액(특별시분 재산세 및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제외한다)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부과·징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나은산(02-2133-3357)